

#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90호
의결 년월일	2003. 10. 15 (제107회)

제출년월일 : 2003. 10. 13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

## ?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하는 등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고 다수 시민의 참여가 부족하여 자전거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시행 주체가 누락된 일부 조항에 주어(시행주체)를 삽입 수정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함 (안 제7조 내지 제8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구청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을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를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를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4항중 “다수가 이용하는”을 “시장은 다수가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를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재정지원) (생략)</p> <p>&lt;신설&gt;</p>	<p>제5조(재정지원) ① (현행 본문과 같음)  <u>②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u></p>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①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p> <p>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의 신축이나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p>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p> <p>-----.</p> <p>②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p> <p>-----.</p> <p>③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p> <p>-----.</p> <p>④시장은 다수가 이용하는-----</p> <p>-----</p>

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생략)

제8조(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 지정·운영) ①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신설>

제9조(시행규칙)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현행 제9조와 같음)